

# 행 정 자 치 부

## 주의·시정 요구

제 목 중요회의록 등 기록물의 등록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화천군, 횡성군

내 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및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생산의무에 따라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회의록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 회의의 참석자 중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을 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작성하도록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등록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원도(○○○○과)는 2013. 1월부터 2016. 9월 감사일 현재까지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따라 ‘강원도○○○위원회’를 29회 개최하여 회의록을 생산하였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강원도 ○○○ ○○○○ 심의위원회’를 22회 개최하여 회의록을 생산하였으나, 이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관리하였고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위원회’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 회의체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2015. 12. 10.까지 ‘강원도 ○○○ ○○○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나 회의록을 생산·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강원도 양구군(○○○○과)은 2013. 1. 4.부터 2016. 8. 30까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를 28회 개최하여 회의록을 생산하고, 81회 서면심의하여 심의의결서 등을 생산하였으나, 생산된 기록물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관리한 사실이 있으며,

강원도 양양군(○○○○실)은 2015. 2. 10.부터 2016. 9. 2까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심의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등을 생산하고, 8회 서면심의하여 심의의결서 등을 생산하였으나, 생산된 기록물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별도의 수기대장에 임의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고,

강원도 양양군(○○○○과)은 2012. 10. 19.부터 2016. 7. 27까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양양군○○○○위원회’를 13회 개최하여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등을 생산하고, 5회 서면심의하여 심의의결서 등을 생산

하였으나, 생산된 기록물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별도의 수기대장에 임의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였고,

2012. 10. 26.부터 2016. 8. 25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3조에 따라 ‘양양군 ○○○위원회(제2분과)’를 운영하면서 회의개최 7회, 서면심의 45회를 실시하였으나 회의록, 심의의결서 등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관리한 사실이 있으며,

강원도 인제군(○○○○과)은 2012. 10. 12.부터 2016. 5. 12까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를 27회 개최하여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등을 생산하고, 30회 서면심의하여 심의의결서 등을 생산하였으나, 생산된 기록물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관리한 사실이 있고,

강원도 화천군(○○○○실)은 2015. 3. 24.부터 2016. 8. 1까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등을 생산하고, 12회 서면심의하여 심의의결서 등을 생산하였으나, 생산된 기록물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별도의 수기대장에 ‘화지-000’과 같은 임의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였고, 이 외에도 ○○○○○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등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관리한 사실이 있으며,

강원도 화천군(○○○○○○과)은 2013. 1. 9.부터 2015. 12. 30까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를 27회 개최하여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등을 생산하고, 41회 서면심의하여 심의의결서 등을 생산하였으나, 생산된 기록물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관리한 사실이 있고,

강원도 횡성군(○○○○실)은 2012. 10월부터 2016.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 회의체 임에도 불구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관련 회의록을 생산·등록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횡성군○○○○심의회’를 34회 개최하면서 회의록을 생산하였으나, 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강원도 횡성군(○○○○과)은 2012. 10월부터 2016. 3. 30까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를 51회 개최하여 회의록을 생산하고, 12회 서면 심의하여 심의의결서 등을 생산하였으나, 생산된 기록물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관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 양구군수, 양양군수, 인제군수, 화천군수, 횡성군수는

**[주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생산한 회의록 등은 임의의 수기대장으로 관리하지 말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원안 제목으로 등록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